

서산 오남수석지구 도시개발사업

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

I군용비행장 소음 관련I

1. 항공기 소음 관련 법령 검토

가. 관련 법령 및 적용 구분

- 서산비행장(K-76)의 현재 군용항공기 운항으로 인한 소음은 「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군소음보상법’)을 우선 적용하여 검토
- 국방부고시 제2026-5호에 따라 서산시 수석동 및 오남동 일부가 서산비행장 소음 대책지역 제3종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
- 군소음보상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 제3종 구역의 주거용 시설, 교육 및 의료시설, 공공시설은 시설물 설치 제한이 없음
- 향후 서산공항의 민항 운영과 관련하여 「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으로 별도 지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조,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1의 시설물 설치제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함

구분	기존 군용비행장	향후 민간공항
적용 법령	군소음보상법	공항소음방지법
확인 기준	국방부 소음대책지역 고시 (WECPNL)	국토교통부 소음대책지역 고시 [Lden dB(A)]
시설 제한	제3종 구역: 제한 없음	별표 1에 따라 61 이상부터 시설별·구역별 제한

[첨부1] 금강유역환경청 회신의견(청주 내수3지구)

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 요구내용

[청주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]

I 총괄

- 본 건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내수리 195 일원에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고자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보완의견임
- 아래의 항목별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본 사업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, 보완할 수 없을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

II 항목별 보완사항

<소음·진동>

- 항공기 소음 측정결과를 제시하였으나(59.3 LdendB(A)), 사업지구보다 동남쪽으로 이격되어 항공기 소음의 영향이 다소 작아지는 측정지점을 선정(AN-1)하였고, 7월 1회(7일) 측정으로 평균적인 항공기 소음영향을 파악하기 어려우며, 측정 시 이착륙 비행기의 종류, 대수 정보제공이 누락되는 등 측정결과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어려움
- 또한 본 사업지보다 공항과 이격거리가 더 떨어져 있거나, 활주로에서 직각 방향으로 이격되어 항공기 소음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북이면사무소, 신대2구, 덕일APT, 입상1구의 국가 자동 측정망 소음도도 70LdendB(A)에 근접하거나 초과하고 있어(372쪽) 사업지의 소음도도 이와 유사하거나 더 높은 소음도를 보일 것으로 판단되나, 평가서에 제시한 내용(391쪽)에 따르면 계획지구는 55~65LdendB(A) 지역으로 해석됨

-
- 따라서 공항의 최근 운영정보와 향후 계획을 고려하여 항공기(군용항공기 등 포함) 운항 등으로 인한 소음·진동이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여야 함
 - 항공기 종류, 이·착륙 방향 및 이동경로(도면에 화살표로 방향 표시 등) 등을 제시
 - 소음영향도 측정지점 선정, 측정 방법 등 「군용 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」에 따라 조사 실시
 - 군용항공기 운항 횟수가 적거나 훈련이 없는 주말(공휴일 포함) 등은 제외하여 5일간 측정
 - 국가자동측정망 장치(372쪽)와 사업예정지 내에서 측정결과(369쪽)의 차이를 분석·제시
 - 항공기 소음·진동으로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
 - 조사결과를 토대로 부지내 소음등고선을 세부적으로 표현·제시(도면, 표 등)하고 57LdendB(A) 초과 지역은 주거시설 및 교육시설 등 정온을 요하는 시설의 배치를 제한하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·제시

끝.

[첨부2] 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 2]

■ 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 2]

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 설치 제한(제5조 관련)

구분 대상 시설	소음대책지역		
	제1종	제2종	제3종
주거용 시설	방음시설 설치조건으로 신축 허가	제한 없음	제한 없음
교육 및 의료시설	방음시설 설치조건으로 신축 허가	제한 없음	제한 없음
공공시설	방음시설 설치조건으로 신축 허가	제한 없음	제한 없음

비고

1. 위 표에서 "주거용 시설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.

가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

나. 다음의 건축물 중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공간

1)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

가) 일용품(식품·잡화·의류·완구·서적·건축자재·의약품·의료기기 등)을 판매하는 소매점, 휴게음식점, 제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㎡ 미만인 것

나) 이용원, 미용원, 일반목욕장 및 세탁소(공장에 부설된 것은 제외한다)

2)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, 기원, 휴게음식점, 제과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

3)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(양잠·양봉·양어 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), 가축시설[가축용 운동시설, 인공수정센터, 관리사(管理舍), 가축용 창고, 가축시장, 동물검역소, 실험동물 사육시설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]

2. 위 표에서 "교육 및 의료시설"이란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의료시설 및 교육연구시설을 말한다.

-
3. 위 표에서 "공공시설"이란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노유
자시설 및 수련시설(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)을 말한다.
4. 위 표에서 방음시설은 창외 경우 복층창 16mm+복층창 16mm, 출입문의 경우 강철
제 문 60mm와 같은 수준 이상의 소리 차단 성능을 갖춘 것을 의미하며, 창은 외부 공
기에 직접 접하는 경우에 한정한다.